「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제 11 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고충 제기 현황(2019 년도)

1. 구청장에 대한 고충 제기 개요

(1) 고충 제기일

2019 년 4 월 4 일

(2) 고충 제기 개요

구 및 구 교육위원회는 동성 파트너가 있는 구 직원 및 교직원에게도, 이성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배우자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있는 직원에게 인정되는 휴가제도(경조휴가, 간병휴가 등)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타가야구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녀 공동 참획과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성별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신청인

구민

(4) 소관 부서

총무부 직원후생과

(5) 고충처리위원회 회부 여부

있음

(6) 고충처리위원회 개최일

2019 년 7 월 2 일

(7) 고충처리위원회 답신일

2019 년 9 월 27 일

(8) 고충처리위원회 답신 개요

「직원의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조례」 제 9 조의 2 제 1 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7 조의 2 제 2 항은 '배우자'의 정의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에는 동성 파트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성 파트너가 있는 직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직원과 같은 휴가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이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 및 구 교육위원회 직원 중 동성을 파트너로 둔 직원도 이성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직원과 동등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9) 처리 결과 통지일

2019 년 10 월 10 일

(10) 처리 결과 통지에 기재된 구의 대응(답변) 개요

구 직원의 휴가제도 개정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구 인사위원회와 협의한 뒤 해당 연도 안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구립 초·중학교 교사 등의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도쿄도에 개선을 요청한다.

(11) 처리 결과 통지 후의 경과

동성 파트너(직원과 성별이 같고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으로, 동일 주소에서의 동거를 요건으로 함)와 그 친족도 경조휴가 및 간병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정되었다(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2. 구청장에 대한 고충 제기 건수 추이

연도	항목	고충 제기	의견 제시	상담	합계
2019 년도	건수	1	0	0	1
	(이 중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회부 건수)	(1)			(1)
2018 년도	건수	1	0	0	1
	(이 중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회부 건수)	(1)			(1)